

202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

1. 인권영향평가 개요

1) 인권영향평가 추진배경 및 목적

- 인권보호·존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」을 배포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실행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권고
- 사업 수행의 결과 또는 그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실시

2)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

- (평가대상)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
※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: 신의료기술평가사업
- (평가기간) 2022년 9월~10월
- (평가방법) 체크리스트 개발 이후 담당부서 자체평가(증빙자료 제출) 및 전문가 검증 인터뷰(증빙자료 적절성 검토)를 토대로 평가결과 분석

3)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

수행단계	수행내용
① 계획 수립	· 인권영향평가 대상, 일정, 방법 등 실시계획 수립 · 2022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
② 지표 설계	·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고도화 - 인권위 매뉴얼 기반 ·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-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자료 기반
③ 평가 교육	· 지표별 담당부서 대상 인권영향평가 관련 실무교육 실시
④ 평가 실시	· 지표별 담당부서 자체평가(체크리스트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) · 전문가 검증(증빙자료 적절성 검토 및 인터뷰 실시)
⑤ 결과 분석	· 평가 결과 도출 및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· 결과보고서 작성

* 국가인권위원회 「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(2018.8.)」 기반으로 실시

2. 인권영향평가 결과

1)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

○ (평가결과) 144개 지표 중 129개 지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(이행률 94.85%)

평가분야	총계	점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29	24	2	3		
② 고용상의 비차별	16	16				
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13	13				
④ 강제 노동의 금지	6	5		1		
⑤ 아동노동의 금지	3	3				
⑥ 산업안전 보장	18	17				1
⑦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7	3	1			3
⑧ 현지주민의 인권보호	8	4				4
⑨ 환경권 보장	13	13				
⑩ 고객 인권 보호	10	10				
⑪ 갑질 및 성희롱 등 예방	21	21				
합계	144	129	3	4		8

2)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

○ (대상사업) 신의료기술평가사업

○ (평가결과) 21개 지표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(이행률 100%)

평가분야	총계	점검결과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
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의 인권 보호	13	13				
② 연구진의 인권 보호	8	8				
합계	21	21				

3. 인권리스크 및 향후 개선방향

- (인권리스크 도출) 20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, ‘보완필요’ 및 ‘아니요’로 평가된 총 7개의 인권리스크 도출
- (향후 개선방향) 지표별 중요도와 시급도에 따라 우선과제, 차기과제,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선 조치

구분	세부지표(인권리스크)	개선 조치사항
우선 과제	① 인권정책선언 재검토·개선	국내외 인권 이슈를 토대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검토·개선하고, 인권경영 선언식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권경영 추진의지 대내외 전파
	③ 인권경영 성과 보고 공개	ALIO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) 또는 홈페이지 ‘인권 알리미’ 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, 인권경영 추진계획, 추진실적 등 인권경영 성과 자료 정기적 게시·공개
	④ 연구원 구제절차 외 조력	연구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
차기 과제	② 부정적 인권 영향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	현재 인권경영위원회 내부위원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함으로써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대변하고 있으나, 직원 외에 협력사 또는 사업 수요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인권 관련 협의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요 이해관계자도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 개선
	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	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, 심리 상담 등 사법적, 비사법적 지원 필요
장기 과제	⑥ 협력사 등의 강제노동 관리	주요 협력사 대상 인권경영 매뉴얼 또는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강제노동, 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노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
	⑦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	주요 협력사 대상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